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12774
----------	-------

제안연월일 : 2018. 3. 29.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354회국회(정기회) 제2차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2017. 11. 23)는 제1차 소위원회(2017. 9. 22) 및 제2차 소위원회(2017. 11. 23)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354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2017. 12. 5)는 제1차 소위원회(2017. 9. 25)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54회국회(정기회) 제4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7. 12. 7)에서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관리준비 경비를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설치목적에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

3, 제244조, 제277조의2).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시 명부작성권자가 그 등본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함(안 제37조제4항 및 안 제218조의13제2항).

다. 선상투표 신고, 선상투표용지 및 선상투표지 송·수신 등에 사용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라.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제3호 및 제256조제5항제1호).

마.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바.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사.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2항제1호).

- 아.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 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2조의2,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 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안 제121조제1항제2호).
- 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안 제147조제9항, 제174조제1항, 제218조의17제4항).
- 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7조제11항).
- 하.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안 제181조제2항).
- 거.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

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함(안 제203조제5항).

너.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261조제12항 신설).

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함(안 제277조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選舉不正監視團)”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選舉不正監視團”을 각각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를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그 謄本(選舉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通”을 “그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제49조제8항 본문 중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본문 중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 한다.

제60조의3제2항제1호 중 “배우자”를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로 한다.

제65조제4항 단서 중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를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한다.

제82조의2제6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한다.

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選舉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제4항 중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중 “開票事務員을 두되, 選舉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를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181조제2항 중 “選舉日前日까지”를 “선거일 전 2일까지”로 한다.

제2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13제2항 전단 중 “그 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을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로 한다.

제218조의17제4항 중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公告하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公告하여야 한다”를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제261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 ⑫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을 “(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본다.

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證據資料를 蒐集하거나 調查活動을 할 수 있다.

⑦ 選舉不正監視團의 所屬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 또는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⑧ 選舉不正監視團의 구성·활동 방법 및 手當·實費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

-----.

⑦ 공정선거지원단-----

-----.

⑧ 공정선거지원단-----

-----.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① -----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② -----
-----선거부정을 감

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
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
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
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
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
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
당의 당원이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④ 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
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
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
정감시단”으로 본다.

제37조(명부작성) ① ~ ③ (생
략)

④ 구·시·군의 장은 選舉人名簿
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本
(選舉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
本을 포함한다) 1通을 管轄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
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생략)

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
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
원단-----.

③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④ -----
-----사이버공정선거
지원단----- . -----“공정
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
거지원단”으로-----.

제37조(명부작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
-----그 전산
자료 복사본-----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현행과 같음)

한다. 다만,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選舉人名簿謄本이 있는 때에는 選舉人名簿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 ② (생략)

③ 第2項의 경우 檢印되지 아니한 推薦狀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推薦選舉權者數의 上限數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 ⑤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략)

⑧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舉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第5호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회의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舉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⑨ ~ ⑮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候補者登錄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

1. (생략)

-----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1. (현행과 같음)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舉區別로 選舉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規定에 의한 女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第48條(選舉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 11. (생략)

② ~ ④ (생략)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생략)

②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2.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3. ~ 11.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 ⑬ (생략)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생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⑤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 ⑬ (현행과 같음)

제67조(현수막) ① -----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⑤

(생략)

⑥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

⑦ ~ ⑭ (생략)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생략)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 + (인구수 × 200원) + (읍 · 면 · 동수 × 200만원)

(현행과 같음)

⑥ -----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 ⑭ (현행과 같음)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1. (현행과 같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 + (인구수 × 200원) + (읍 · 면 · 동수 × 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
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
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
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⑤ · ⑥ (생략)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開票事
務員을 두되, 選舉日전 3日까
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
다.

② ~ ④ (생략)

제181조(개표참관) ① (생략)

② 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管轄區
域안에서 실시되는 選舉에 후보
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
여 選舉日前日까지 당해 區·市·
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
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
告를 할 수 있다.

③ ~ ⑫ (생략)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

----- 제7항
까지, 제10항 및 제11항-----.

⑤ · ⑥ (현행과 같음)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 개표사
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1조(개표참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

----- 선거일 전 2일까지-----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

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
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
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공고하
여야 한다.

⑤ ~ ⑨ (생략)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
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
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
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
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
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
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
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
항에서 같다)를 騷擾·교란하거
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
用具·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
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
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투표사무원을 두
어야 한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
정선거지원단원-----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48條(選舉權者의 候補者推薦)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印받지 아니한 推薦狀에 의하여 選舉權者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者 또는 選舉運動을 위하여 推薦選舉權者數의 上限數를 넘어 選舉權者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者

2. ~ 12.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檢印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 12.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4. · 5. (생략)

④ (생략)

⑤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 ⑪ (생략)

<신설>

第277條(選舉管理經費) ① (생략)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

③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4.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 ~ ⑪ (현행과 같음)

⑫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第277條(選舉管理經費) ① (현행과 같음)

② -----

